#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13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 박은정 · 김준형 · 조 국

이해민 • 강경숙 • 김재원

김선민 · 정춘생 · 서왕진

신장식 • 황운하 • 차규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영상물 유포 차단을 위해 신속한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소송과 별도로 통상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과의 형평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합성물'제작·유포 범행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행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강화하고,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 직권에 의한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및 제31조제6항 신설등).

#### 법률 제 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를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로, "제12조 및 제14조에"를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3(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 ①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 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급적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
-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제5항의 유죄판결서의 정본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 중「형법」 제32장에 규정된 죄 및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5조(배상명령) ①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	
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	
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	
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	
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	
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	
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	<u>제10</u> 조부터 제
<u>14조까지, 제15조</u> (제3조부터	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	의3, 제15조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u>제14조에</u> 규정된 죄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25조의3(일부 인용 및 직권 명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 (5) (생 략) <신 설>

령의 활용) ① 배상명령 신청 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 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②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 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 지 아니하는 한 가급적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
- ~ ⑤ (현행과 같음)
- ⑥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달 하는 제5항의 유죄판결서의 정 본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 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 25조제1항제1호 중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죄 및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 해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 다.